

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부칙(2016.5.27.)~부칙(2023.8.1.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부칙(2016.5.27.)~부칙(2023.8.1.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(제2023-000호, 0000.00.00)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<p>제17조(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)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. 다만,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</p> <p>2. 장애인사용 승용차(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,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), 긴급 자동차, 보도용 자동차, 외교용 자동차, 군용 자동차, 경호용 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 자동차, 승합자동차,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</p> <p>3. 민원인 차량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영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,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,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.</p>	<p>제17조(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)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, 방법,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,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.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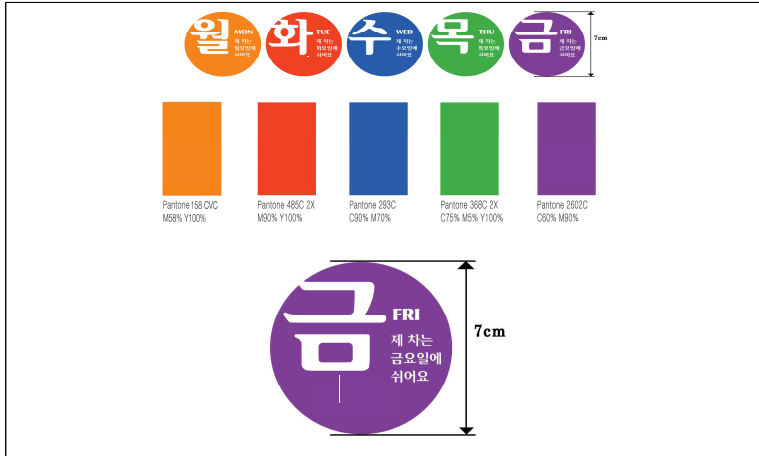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(안)
<p>< 별표 7 > 1. 대상 및 방법 가.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<u>의무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용차(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),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.</u></p> <p>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(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,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) ③ <u>긴급 자동차, 보도용 자동차, 외교용 자동차, 군용 자동차, 경호용 자동차, 화물 자동차, 특수 자동차, 승합 자동차,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(단,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,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)</u> ④ <u>민원인 차량(단,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< 별표 7 > 1. 대상 및 방법 가.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<u>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.</u></p> <p>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(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,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) ③ <u>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</u></p> <p><삭 제></p> <p>나.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<u>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·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① <u>인구 50만명 이상의 시·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(안)
<p data-bbox="627 758 784 790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data-bbox="291 1236 1108 1428">나.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시행한다. 단,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대전, 울산 등)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.</p>	<p data-bbox="1176 279 1948 478">② <u>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·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'다'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1176 486 1948 686">③ <u>인구 30만명 미만의 시·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1131 758 1948 845">다. <u>인구 50만명 미만의 시·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'가'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1176 861 1948 1117"> ① <u>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</u> ② <u>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</u> ③ <u>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</u> ④ <u>출장, 외근,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</u> </p> <p data-bbox="1131 1236 1948 1428">라.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단,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대전, 울산 등)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.</p>

현 행							개 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— < 요일제 적용 방식 > 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선택요일제 : 월~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◆ 끝번호요일제 :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							<p>— < 요일제 적용 방식 > 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선택요일제 : 월~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◆ 끝번호요일제 :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유 형 별</th> <th colspan="5">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월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화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선택요일제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~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끝번호요일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 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 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 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, 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 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유 형 별	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					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	월	화	수	목	금	선택요일제	월~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						끝번호요일제	1, 6	2, 7	3, 8	4, 9	5, 0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유 형 별</th> <th colspan="5">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월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화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수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선택요일제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~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끝번호요일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 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 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 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, 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 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유 형 별	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					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	월	화	수	목	금	선택요일제	월~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						끝번호요일제	1, 6	2, 7	3, 8	4, 9	5, 0	
유 형 별	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					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월	화	수	목	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택요일제	월~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끝번호요일제	1, 6	2, 7	3, 8	4, 9	5, 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 형 별	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					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월	화	수	목	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택요일제	월~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끝번호요일제	1, 6	2, 7	3, 8	4, 9	5, 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다. 각 공공기관에서 '선택요일제'를 실시할 경우,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·부착하여야 한다.</p> <p>○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,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,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요일별 색상 : 월(주황), 화(빨강), 수(파랑), 목(녹색), 금(보라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모양 및 크기 : 원형(지름 7cm)</p>							<p>다. 각 공공기관에서 '선택요일제'를 실시할 경우,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·부착하여야 한다.</p> <p>○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,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,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요일별 색상 : 월(주황), 화(빨강), 수(파랑), 목(녹색), 금(보라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모양 및 크기 : 원형(지름 7cm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<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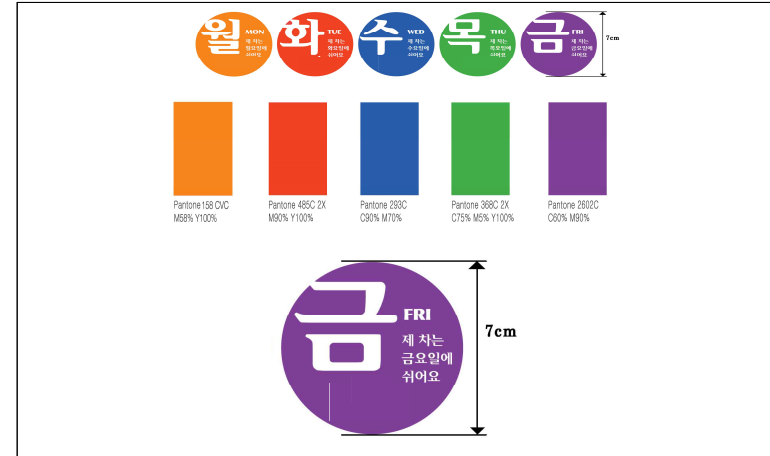


*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,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

-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.

개 정(안)

<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>



*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,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

-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(안)
<p>2. 적용 제외</p> <p>가. 공통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,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, 임신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. ○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,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. ○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, 임신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[참고2]와 같이 “모든 공공기관 출입용” 제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. 	<p>2. 적용 제외</p> <p>가. 공통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,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, 임신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. ○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,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. ○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, 임신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[참고2]와 같이 “모든 공공기관 출입용” 제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<p>나. 제외대상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(상이 국가유공자, 5·18 민주부상자,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) 중 <u>국가보훈처</u> 발행 “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”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. ○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“장애인 자동차표지”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[참고1]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 	<p>나. 제외대상</p> <p>① <u>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<u>경형자동차</u>”란 <u>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.</u> ○ “<u>환경친화적 자동차</u>”란 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.</u> <p>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(상이 국가유공자, 5·18 민주부상자,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) 중 <u>국가보훈부</u> 발행 “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”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. ○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“장애인 자동차표지”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[참고1]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<p>① 임신부 및 유아 동승차량</p> <p>○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(병원증명서,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부 수첩)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《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. <p>《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·퇴근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·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, 유모, 보모,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<p>☞ (임산부)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</p> <p>☞ (유아) 영·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·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. *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·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	<p>③ 임신부 및 유아 동승차량</p> <p>○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(병원증명서,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부 수첩)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《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. <p>《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·퇴근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·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, 유모, 보모,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<p>☞ (임산부)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</p> <p>☞ (유아) 영·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·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. *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·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

현 행	개 정(안)
<p>③ <u>민원인 차량</u></p> <p>○ <u>각 공공기관에서는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임시 제외증 등을 부여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<u>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</u></p> <p>○ <u>“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”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(역)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(역)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 (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)</u></p> <p>⑤ <u>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</u></p> <p>○ <u>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,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(안)
<p data-bbox="622 331 775 363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622 671 775 703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309 959 1061 991">④ 기타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차량</p> <p data-bbox="315 1054 1104 1230">○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 제 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	<p data-bbox="1149 331 1946 411">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</p> <p data-bbox="1149 475 1946 603">○ 06:00 이전 출근, 23: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1149 667 1910 699">⑦ 출장, 외근,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</p> <p data-bbox="1149 762 1946 890">○ 불가피하게 출장, 외근,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1149 954 1630 986">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</p> <p data-bbox="1149 1050 1946 1230">○ 모든 공공기관은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-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다. 제외증명서의 발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○ ‘제외증명서’는 [참고1]의 양식으로 <u>공공기관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하고,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.</u></p> <p>-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신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<u>하고, 그 외 사유에 의해 발급할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다. 제외증명서의 발급</p> <p>○ <u>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‘제외증명서’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.</u></p> <p>○ ‘제외증명서’는 [참고1]의 양식으로 <u>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,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.</u></p> <p>-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신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<u>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특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. ○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○ 각 공공기관은 [참고2]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.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특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○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○ 각 공공기관은 [참고2]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(안)
<p>참고1.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p>참고2.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p>[참고1]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div data-bbox="349 547 1048 874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(○○○기관 출입가능 차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제외기간 : 2014.1.1 ~ 2014.12.31 ○ 제외사유 : 예시) 유아 동승차량 ○ 차량번호 : 2013.12.31 ○○○기관장 (인) </div> <p>[참고2]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div data-bbox="349 1007 1048 1382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(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제외기간 : 2014.1.1 ~ 2014.12.31 ○ 제외사유 : 예시) 임산부차량, 검사 업무 수행 ○ 차량번호 : 2013.12.31 ○○○기관장 (인) </div>	<p>참고1.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p>참고2.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p>[참고1]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div data-bbox="1189 547 1888 874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(○○○기관 출입가능 차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제외기간 : 2014.1.1 ~ 2014.12.31 ○ 제외사유 : 예시) 유아 동승차량 ○ 차량번호 : 2013.12.31 ○○○기관장 (인) </div> <p>[참고2]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</p> <div data-bbox="1189 1007 1888 1382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(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제외기간 : 2014.1.1 ~ 2014.12.31 ○ 제외사유 : 예시) 임산부차량, 검사 업무 수행 ○ 차량번호 : 2013.12.31 ○○○기관장 (인) </div>